

영재 교육원 설치와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

강무섭(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조정실장)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 그 동안 법제화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영재교육진흥법”이 작년 12월에 제정된 것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하게 생각한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영재교육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영재교육진흥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늘 학회에서 이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인은 영재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과 영재교육연구원 설치·운영 부분에 관한 내용만을 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 대해서 발표주제에서는 중앙위원회는 과학, 체육, 예술, 인문사회 등 4개분야의 위원회를 두고 소속은 유관정부부처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이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교육부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법에 명시한 대로 교육부에 하나만 설치하고 이때 위원수와 위원구성을 어떻게 하고, 기능은 무엇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시행령에 담겨져야 한다.

의견을 제사하면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법에 정한대로 교육부에 설치하고,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과학, 체육, 예술, 인문사회 등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특히 인적자원을 총괄·조정하는 교육부총리제의 도입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본다.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도 본 발표에서는 시도위원회로 하여 어디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설치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본다.

영재교육연구원의 설치·운영은 본 발표에서 너무 거창하게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토론하는데 한계를 느끼지 않을 없다. 다만 토론자의 의견을 말한다면 “영재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재교육연구원의 기능은 그간 “한국교육개발원”이 지속적으로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에 관련된 업무의 노우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발표논문에서 제안한 것처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영재교육연구회를 추가 신설하고, 여기에 4개 연구원을 설치하는 등의 생각은 지나치게 영재교육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발상이다. 그리고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그렇게 많이 설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